



LOCATION 홈 > 뉴스 > 오피니언

이메일 | 프린트 | 기사목록 | -가 +가 | 내 블로그에 담기

오피니언

외부기고 칼럼

본기사에 대한 댓글

- 0 개 -

### [이민 상담] 취업 영주권 스폰서십 문제 [LA중앙일보]

이동찬 / 변호사

기사입력: 10.12.09 21:57



▶문= 저는 10년 동안 호텔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9월 한 종업원에게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했습니다.

그 종업원을 스폰서해주기 전에 저희 회사는 많은 흑자로 세금보고를 했지만 2008년에 경기가 악화되므로 회사에 큰 손실이 났고 적자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호텔이 다시 흑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종업원의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007-2008년에는 그 종업원이 호텔에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답= 스폰서 회사는 종업원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임금지불능력을 소유해야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스폰서를 받은 종업원이 스폰서 회사에서 제의된 급여나 그 이상을 받고 2008년에 일년 동안 일을 했다면 2008년도의 임금지불능력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그 종업원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이민국은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보고 임금지불능력을 판단할 것입니다.

세금보고서의 순이익이 종업원에게 제의된 급여보다 많다면 임금지불능력은 증명됩니다.

만약 세금보고서에 순이익이 종업원에게 제의된 급여보다 적거나 회사의 적자로 순이익이 없다

면 스폰서 회사는 세금보고서에 나타난 순자산을 이용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은 현 자산에서 현 채무를 뺀 것입니다.

▷ 문의:(213)291-9980

- ▶ 존 매케인의 딸 '야한 사진'에 온라인 '후끈'
- ▶ 이선균 "첫 전라노출 베드신, 아내 전해진이..."
- ▶ [중고물품] 필요한 물품은 여기부터 가보자!
- ▶ [ASK] 1.1%의 차이, 채용자를 받는것이?
- ▶ 한국 아웃도어 1위 브랜드 "美본사도 우리한테..."
- ▶ 기숙사 룸 메이트의 성관계 때문에 갈곳이...
- ▶ 악어와 사투 끝에...93kg짜리 농어 낚았다
- ▶ [blog] 인터넷의 정보를 모두 읽으려면 5만 7천년

뉴스홈으로 맨위로

이메일 | 프린트 | 기사목록 | 내 블로그에 담기

### 나도 한마디...!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감정표현: 

글올리기

HOT PHOTO



오늘은 노란 옷으로~



아저씨 뭐예요?



아찔한 그녀의 라인




신비 그 자체, 모노레익




25년 오직 한길만

· YELLOW PAGE



옐로우페이지 광고상




이민법 전문  
임상우 변호사




간호 자격증  
The Walter Jay  
Institute



상속법/가정법  
김진환 변호사



스테이트 팜  
박성욱  
부에나 팜



스테이트 팜  
헤더 정  
토렌스

